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3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10일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6월 14일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

나. 제안이유

-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앙공원)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기부채납, 30%이하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
-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2장 :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장 :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제8조 ~ 제10조 기부채납의 대상·시기·조건
- 안) 제4장 :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제11조 부지 매입비 등 납입
- 안) 제10장 : 공원시설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제25조 설계·인허가,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의 착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정관리, 사업이행보증금, 구미시장의 감독

○ 안) 제11장 : 구미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6조 행정적 지원

○ 안) 제12장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제28조 ~ 제31조 위험배분의 원칙,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 사유 및 처리, 구미시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안) 제13장 : 협약의 종료

- 제32조 ~ 제3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협약해지시의 효과,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안) 제14장 : 권리의 처분

- 제36조 ~ 제38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비공원시설 사업의 공동시행,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 안) 제15장 : 분쟁의 해결

- 제39조 ~ 제40조 분쟁의 해결, 중재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70%이상 조성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도시공원은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중앙공원 기반시설은 2020년까지 완료하며, 아파트는 2020년 이후 분양한다. 단, 여건 변동 시 분양시기를 조정한다. 등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